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아래 공사 시행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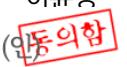
1. 공사내용	
공사명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장소(주소)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2 블록
공사의 종류	공동주택(V) 건축물() 도시철도()
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상세 협의 결과" 참조
중계장치 설치 위치	"상세 협의 결과" 참조
접지단자 위치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
전원단자 위치와 용량	이동통신중계장치에 최근접(총용량4kW 이상, 교류 220V, 단자 3개 이상)
3. 공동주택(500세대 이상)에 대한 사업주체의 협의결과 게시 방법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 공개방법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
청약신청 접수 예정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협의 결과에 따른 중계장치의 설치 위치를 공개해야 함.	
4.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p>①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 1부 제공 ② 착공설계 신청 전 설계도면 확인에 관한 사항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중계설비) ③ 건축물의 착공/준공일정 및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등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p>
5.기타 협의사항	"상세 협의 결과" 참조

※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동통신 안테나, 중계장치 등 중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1부.

상기 협의내용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을
상호 협의하였음.

2023년 08월 08일

구분	법인/단체명(상호)	대표자(성명)
건축주	대방건설(주)	구찬우
대리인	(주)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이유상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

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한국전파진흥원

상세 협의 결과

1.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1. 옥상층 :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 중계장치 설치 위치

1. 옥상층 :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 지하1층 : 203동 통신실, 206동 통신실
3. 지하2층 : 203동 PIT, 206동 PIT
4. 지하3층 : 203동 PIT, 206동 PIT

3. 기타 협의사항

- 상호 협의결과서 제4항 공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 건축주등* 필수 보완사항 (홈페이지 "착공통보" 화면에 등록)
 - ① 인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 ② 정보통신 착공도면 1부
 - ③ 착공예정일
 - ④ 준공예정일
 - ⑤ 공사요청일
 - ⑥ 공사현장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건축주등 : 건축주 외 건축사, 건설사, 통신설계사, 시행사, 시공사 등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협의를 대표한 자

- 중계설비 설치시기 : 건축주 공사요청일 ~ 건축물 준공검사 이전에 설치를 하여야 함
※ 착공 후 준공예정일을 입력하지 않거나 준공에 임박하여 입력하는 경우, 이동통신사 중계설비의 공사물자 확보(최소5개월 소요)가 불가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상호협의결과서](#) 내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위치와 도면 상의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이동통신 구내중계 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를 참고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계도서가 시공사(건설사)에게 반드시 전달되어, 건축물에 선로설비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